2020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지원 공고

대구광역시와 함께 (재)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세금감면, 자금지원, 투자유치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과 지역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경영 혁신형 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획득을 지원하고자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0년 8월 21일 대구광역시장 (재)대구테크노파크 워장

1 〉지원목적

-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영개선, 지속성장과 경쟁력 확보
- O 혁신형 기업 발굴 및 경영인증 지원을 통해 기술과제 공모 및 수주 증대 등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O 일반 중소기업을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하여 정부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

동대구 • 성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정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집적되어 있거나 대학, 연구소 등이 소재하고 벤처기업 증가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등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 (근거법규)

- 벤처기업육성체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4(촉진지구 지정 및 해제)
- 벤처기업육성체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12

(입주혜택) 기반시설 구축, 경영지원, 제도개선(조세감면, 규제완화 등), 자금, 입지, 인력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지방벤처 활성화 사업) 시 우대 등 체계적으로 지원

- 세제혜택 : 취등록세 37.5% 감면, 재산세 37.5% 감면 (지구별로 추가 조세혜택 有)
- 경영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의 기술 · 사업화, 판로 · 마케팅, 교육 · 컨설팅, 네트워킹 등

(지정현황) 대구광역시 동구(신천3동, 신천4동 일대), 수성구(범어1동, 범어2동, 범어3동 일대), 달서구(호산동, 호림동 일대) 1.29㎢

2 〉 지원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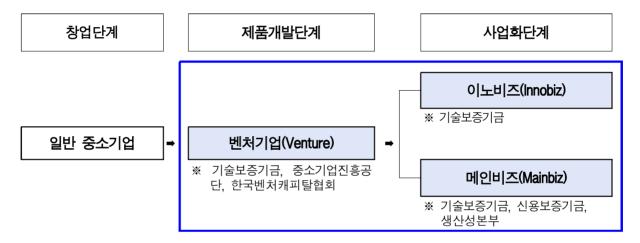
○ 지원규모 : 10개사 정도(1기업 1인증)

※ 예산범위 내에서 벤처, 메인비즈, 이노비즈 지원업체 수 조정

○ 지원기간 : 2020. 8. 21 ~ 2021. 1. 29 ※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소재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 희망 기업

○ 지원분야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3개 분야



O 지원내용 :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인증수수료

구분	지원내용	지원가능규모
	- 전문가 1:1 매칭 및 기업 성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맞춤형	- 전문가는 TP내외부 전문가 POOL을 통해 매칭 예정	기업당
인증 컨설팅	※ 컨설팅 내용 : 기술혁신능력, 기술사업화 능력, 기술혁신경영능력	최대 2회
	등 평가지표별 기술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및 절차 등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內 : 최대 70% 지원	입주
인증	-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外 : 최대 50% 지원	요 ' 소재지별
수수료	※ 신규, 기존 인증 연장의 기술평가료, 인증서 발급 수수료 포함,	초대 70%
	인증별 차등 지원	그데 70%

※ 지원금 이외 차액은 신청기업이 별도 부담하며, 인증획득 완료 후 사후 지급

※ 신규인증, 기존 인증 연장 가능

- ※ 상기 일정은 추진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1. 1. 29(금)까지 수시신청 및 접수 ※ 예산 소진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이메일, 우편 및 직접 방문접수 ※ 사업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파일은 이메일(kmk0201@ttp.org)로 별도 송부

연번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및 회사소개서	원본 1부	필수
2	최근 3년간 결산재무제표 또는 최근3개년도 감사보고서	사본 각1부	필수
3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정 또는 확정 최근신고분)	사본 각1부	필수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필수
5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해당시
6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발급가능	사본 1부	필수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필수
8	지식재산권 및 인증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해당시
9	주주명부사본	사본 1부	해당시
10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11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원본 1부	필수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제본 및 스테이플러 금지 위의 순서대로 A4에 인쇄후 집게 이용 제출

○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7층(신천동)

○ 담당부서 : (재)대구테크노파크 대구과학기술진흥센터

○ 문의처: ☎ 053-757-3729 / E-mail: kmk0201@ttp.org

5 〉 유의사항 및 신청 제외 대상

O 유의사항

- 사업선정 이후에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거나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적발될 경우 기 체결된 협약을 취소하며 기 지급된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 환수 조치 될수 있음
- 접수는 반드시 한글파일과 날인 후 원본 파일로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신청제외 대상(모집 공고일 기준)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기업이 부도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체납처분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제재를 받고있는 경우
 -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
 -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 그 외 현행 법령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 하거나 언론보도,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